

해외 환경규제 현황과 기업의 대응방안



김 선 화
KOTRA 해외조사팀장
☎ 032-560-7440, minhy03@me.go.kr

- <필자역력>
- 서울대학 공국제경제학과 졸업 ('88)
 - KOTRA입사('88)
 - 국제경제 과 구아리시 아부 근무 및 두 차례에 걸친
브뤼셀무역관 파견
 - 통상전략팀장을 거쳐 현재 해외조사팀장으로 근무

선진국, 환경규제 강화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경제 구축을 위한 환경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규제가 국가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여 친환경제품이 기업의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05년 2월, EU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환경'이 경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경제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 수출의존국의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는 국내 산업계와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적시에 획득, 전파, 공

유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시급한 일이다.

환경규제의 일반적 경향

그렇다면 2006년 세계 각국의 환경규제 경향은 과연 어떠한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경향은 환경규제가 계속해서 전지역, 전산업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환경규제가 유럽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주로 활용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중국과 인도를 선두로 해서 선진국의 조치를 모방한, 개발도상국들의 환경규제 도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대상품목 역시 확대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환경규제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가방,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시작해 완제품, 그리고 중간재에까지 규제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규제제도의 도입역사가 짧은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규제조치를 모방하되, 선진국들이 초기에 의류나 장신구와 같은 생활필수품 위주로 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리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과 같은 주력산업에 먼저 환경규제조치를 도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그런 분야들이 모두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산업이라는 점이다.

규제형태도 다양화되고 있다. 특정 품목별로 적용되는 환경라벨 부착, 환경세, 수거의무, Recycle비율 설정, 특정물질 사용금지 등과 같은 전형적인 환경규제조치뿐만 아니라 화학물질 전체, 전자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제제도 또한 도입,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의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기는 하

나, 강제적인 환경법규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산업계 자율협약 도입도 모색되고 있다.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제환경협약의 제정 협상과 체결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협약에 의거한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경향이다. 현재 발효 중인 국제환경협약은 220개를 상회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몬트리올의정서,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아시아-태평양 新기후 변화 협약 등과 같이 무역규제조치를 포함한 협약이다.

유럽의 환경규제

지난 2005년에 이어 금년에도 EU 차원의 '환경'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련의 혁신적 환경규제와 제도를 탄생시킨 주역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더욱 심화하고 확대하려는 입장인 반면, 회원국들과 산업계의 입장은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무게중심이 치우쳐 있는 상태이다.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환경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이 엇갈려, 환경규제가 기술과 혁신을 자극하여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견해와 과도한 규제는 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교토협약 이행을 위해 EU는 200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도(ETS)를 실시하고 있다. ETS는 25개 EU 회원국별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총량 목표를 정한 후, 이를 다시 회원국 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재배정하는 제도로 EU 회원국은 오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 줄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협약 의무 이행을 위해 각 회원국들은 오는 6월까지 산업용 이산화탄소 감축방안을 담은 제2라운드 실행계획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해야한다.

이외에도 EU에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인 메틸브로마이드의 생산, 판매, 소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기존 유럽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인 EURO III의 기준치보다 무려 50% 이상 강화된 EURO IV가 발효 중에 있다. 2007년부터는 페인트와 안료, 자동차 Refinishing 제품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량을 연간 50% 감축할 계획이며 작년 10월 시작된 2차 유럽기후변화협약(ECCP II)에 대해서도 금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역시 작년에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정책(REACH) 법안에 대한 2차 독회가 올해 안에 EU 의회와 이사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ACH는 화학제품 생산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화학제품에 대한 시험 및 위험성 평가의 책임 소재를 EU 각국 정부의 관계기관에서 제품의 생산자로 변경하는 정책으로서 올 하반기 EU 의장국인 핀란드에 '등록관리기구'가 설치될 계획이므로 이 기간 중에 REACH 법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전자 제품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전기/전자제품의 폐기물처리지침(WEEE)에 따라 생산자에게 자사 제품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주어졌고 올해 7월 1일부터는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의 6개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규제(RoHS)가 발효된다. 또한 올해부터 2002년 7월 이후 신규 등록된 차량의 폐차, 2007년 1월 이후는 중고차를 포함한 모든 폐차의 무료 수거 및 재생시스템 구축(폐차처리지침)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환경규제

미국은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하는 등 국제적인 환경보존 노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으나 작년 8월,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점진적 온실가스 감축방식을 논의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新기후협약'을 주도하면서부터 환경규제 기준과 배출권 거래시스템, 제품 표준 등에 대해 EU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2004년부터 미국 전역에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규제하는 Tier II가 시행되고 있으며 卅 단위의 독자적 환경규제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04년부터 연방정부의 규제보다 더 강화된 LEV II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허용치를 128g/km로 줄이기로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이외에도 뉴저지,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등 7개 북동부 주에서 이 법안의 채택을 고려 중이다.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의 배출량 기준치도 최대 95%로 삭감하는 규정 및 SUV 등 소형트럭의 배출 기준치를 강화하는 규정도 시행하고 있다.

폐가전 법규도 올 미국 환경규제의 또 하나의 현안이다. 텍사스 주, 캘리포니아 주 등에서 가전제품 및 컴퓨터를 대상으로 품목별로 재사용 비율을 설정하고, 수거 및 라벨링을 의무화하기 시작했다. 텍사스 주에서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폐가전 처리 및 재활용 규정 이행계획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계획서를 검토 후 그 준수가 미흡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시장 판매가 제한되었다. 유해물질 함유내용, 폐기물 수거정보 등의 라벨링 의무도 함께 부여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이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였는데, 주된 대상제품은 비디오 디스플레이기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재활용법도 제정, 폐휴대전화 무료수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한편, 휴대전화의 친환경 설계도 권고하고 있다. 컴퓨터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폐컴퓨터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기위해 신제품 판매 시 재활용 수수료가 징수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호르몬 함유 플라스틱 유아용품 규제, 납 함유 완구 및 금속장기구 규제 등이 내년도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규제이다.

중국 및 일본의 환경규제

연평균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2008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고속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환경규제를 통한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냉장고와 에어컨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등급 표기 의무화 조치, 수은 함유 배터리, 니켈 카드뮴 배터리, 납 축전지 등에 대한 수입 및 판매금지 규제와 수거시스템 의무화, 몬트리올 의정서 상의 오존층 파괴물질 생산 및 소비 금지 규제 등이 우리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규제들이다.

중국은 이러한 품목별 환경규제에 그치지 않고, '청결생산촉진법', '그린생산심사집행법' 과 같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제조 및 수출입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환경원칙, 즉,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포장물 설계 시 환경디자인 고려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럽과 미국의 폐가전 법규와 유사한 법규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가전 및 전자부품 등 포괄적인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작년 7월부터 특정 유해물질 함유를 금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 시 수거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에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배기가스 자가진단장치 장착을 권고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EURO II 기준을 도입하여 단계별 배기가스 배출절감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건축 내장재의 포름알데히드(HCHO) 방출 기준에 따라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산업표준(JIS), 일본농업표준(JAS)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작년부턴 자동차에 사용되는 프레온 가스와 에어백, 폐차 쓰레기를 자동차 생산업체가 해체사업장에 맡겨 처분하는 자동차 리사이클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 시 폐차 재활용비용 약 1만 엔을 지불해야하며 업체는 중량기준으로 95%까지 재활용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배기가스와 관련하여 가솔린 차량, 디젤 차량 등 차종별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배기가스 자가진단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2002년부터 배기가스 절감 자동차에 대해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대응방안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수량규제, 반덤핑관세 등 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직접적 규제방식보다는 환경보호라는 이념적 정당성을 토대로 한 간접적 규제방식을 통해 수입품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규제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수출업체의 비용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환경경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환경규제 정보를 적시에,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환경규제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여러 환경정보 수집, 전파 채널을 구축, 업계 의

견 전달 등 여건이 한창 마련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점은, 해외환경규제 정보를 단순히 '환경규제의 무역장벽화'를 사전에 막는 것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환경규제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진출확대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 공기정화기 시장, 하수처리장비 시장, Eco-food 시장 등 새로운 기회는 동시다발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난다. 2010년의 세계 환경시장 규모는 8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환경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선정, 기술 개발 및 시장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해외환경규제를 수출에의 위협으로 보고 피하려고 하는 소극적 접근이 아니라, 이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로 보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다.

새 가 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출5종

- 청대식품 · 박헌기 · 전북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281
- 유아식품 · 김경조 ·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덕리 763-6
- 장수곰돌 · 오창근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식천리 473-1
- 중림산업 · 임선명 · 전북 군산시 서수면 마룡리 93-17
- 남양제약영농조합법인 · 전두성 · 전북 무주군 무주읍 가옥리 618-2
- 모약산식품 · 김호상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184-1
- 진안무주축협물류센타 · 조합장 · 전북 진안군 진안읍 연장리 1616
- 일성레저산업(주)지리산콘도 · 김기출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805-1
- (주)남산 · 장남익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931-3
- 장수축협한우계열회사업소 · 최병옥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용계리 산110-2
- (주)삼기엔텍 김제공장 · 강상순 · 전북 김제시 성덕면 성덕리 8-15
- 온성전기제작소 · 최창호 ·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63-71
- 선운산동백복재(영) · 이재철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월산리 119-11
- (주)인스나인 삼화세라믹 · 황인옥 · 전남 화순군 동면 운농리 1041
- 대화정공(주) · 김선기 ·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709-4
- 보성축협 단미사료공장 · 김병수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대아리 1669-1
- 호남대학교 · 총장 · 광주 광산구 서봉동 59-1
- 서일공업사 · 권경성 · 전북 군산시 산북동 1112-2
- 애경화학(주)청양공장 · 이수맹 · 충남 청양군 정선면 역촌리 675
- 유신석재산업(주) · 홍기표 · 충남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603-6

- 대림프라코(주) · 최병림 · 충남 아산시 도고면 외산리 11
- 한빛테크원(주) · 신승경 · 충남 논산시 성동면 원북리 409
- 한국한의약연구원 · 이형주 ·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24
- BMC아산 · 이형우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운리 259-1
- (주)보광화학 · 민주홍 · 충북 청원군 현도면 상삼리 178
- 삼보종합건설(주) · 유봉기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641
- (합자)도원주유소 · 임현권 · 충북 청원군 내수읍 도원리 175-1
- 서울고속(주) · 권영선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504
- (주)계룡산업속리산유스타운 · 이윤호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리 3-8
- (주)유맥스 · 신언치 · 충북 음성군 갑곡면 상우3리 73-1
- 성보산업 · 함봉진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50
- (주)파운텍 · 김원일 · 충북 충주시 용탄동 1088-3
- 과산농협미곡처리장 · 조합장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정용리 104-1
- (주)아트박스 · 조석현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리 313-24
- 한국화장품(주)음성공장 · 임충헌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용성리 76-1
- 퓨전푸드시스템 · 최승규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괴정리 481-3
- 진양공업사 · 김주성 · 충북 제천시 장락동 399-3
- (주)엠티엠옵틱스 · 타카라다야츠시 ·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1-6
- (주)현성ENT · 진교철 · 충북 충주시 풍동 568-7
- 대우청주서비스(주) · 대표이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41-2
- (주)정대프렌트 · 신능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518-3